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81 발의연월일: 2020. 11. 20.

발 의 자:김영식·김용판·임이자

김기현・강민국・박형수

허은아 · 김형동 · 박대수

구자근 · 정찬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등(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 간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통신매체의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각종 포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광고의 경우 인터넷환경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년 12월에 현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지 않는 정부기관등이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성격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언론진 흥재단에 위탁하되, 정보통신망·방송 등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나.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회 보고 사항으로 정부광고 업무를 의뢰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현황, 이를 위반한 데 따른 시정요구 현황 및 그 결과를 추가함(안 제14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 재단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광고를 하려는 홍보매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통신 관련 매체인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없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없다.

제14조 중 "집행내용"을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

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정부 광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 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정 부광고를 하려는 홍보매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통신 관련 매체인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 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 탁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 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기

<u>③</u>·<u>④</u> (생 략)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 저 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u>집</u> 행내용 등을 다음 연도 5월 31 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방송기	광고인
경우에는 방	송광고	판매액	의 10
<u>0</u>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	<u>다.</u>
<u>④</u> ・ <u>⑤</u> (현호	행 제3형	} 및	제4항
과 같음)			
세14조(국회 보	L고)		
			<u>집행</u>
내용, 제5조	를 위반	한 정부	부기관
등의 현황 및	제13조	들에 따	른 시
정조치 요구	- 현황고	나 시 ⁷	정조치
<u>결과</u>			